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0382
----------	-------

제안연월일 : 2014. 4.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상정	소위 심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363	김기현 의원 등 10인	'13.10.31	상정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14.4.10)
				소위 심사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4.4.1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955	조현룡의원 등 10인	'13.11.25	상정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14.4.10)
				소위 심사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4.4.15)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14. 4. 17)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건축물의 에너지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 중 출생년도 및 성별 자료, 공동주택 관리비 및 사용량 등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둘째,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외벽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양 등 일사(日射)조절 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 등급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토록 하려는 것임.

셋째,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문, 검토, 지원 및 관리 등 업무를 전담할 전문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토록 하려는 것임.

넷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민간자격제도를 국가자격으로 전환하고, 자격시험, 준수사항, 자격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

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가 조성한 사업비를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7조제4항 신설).

나. 건축물의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에너지정보 이용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 중 출생년도 및 성별 자료, 공동주택 관리비 및 사용량 등 정보의 제공을 해당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창을 설치하는 등의 경우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건축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을 받

아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제5항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매입 또는 임차인이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18조제1항)

사. 시·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8조 신설).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거나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신설).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시험 합격자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업무를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검정방법, 자격관리, 교육훈련 방법 및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37조 신설)

차.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일사(日射)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녹색건

축 인증 결과의 표시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마련함(안 제41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축물을 말한다”를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6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 작성
2. 녹색건축의 인증·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사후관리
3. 녹색건축물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4. 녹색건축물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5.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6. 녹색건축물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7.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건축자재(이하 “녹색건축자재”라 한다)
및 설비의 성능평가·인증 및 사후관리
8.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 생산·시공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9.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의 공용화 지원
10. 녹색건축센터의 운영 지원
1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실시
12. 녹색건축물 관련 국제협력
13. 녹색건축물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4.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제1항제4호 중 “따른 재원의 조달방안”을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및 조성된 사업비의 집행·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에 제5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7.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 또는 관리단으로부터 건물의 관리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단체

제1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통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에게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 또는 실시간으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제3항에 따른 제출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공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를 “제3항·제4항에 따른 제출 방법·서식, 제5항에 따른 공개 방법·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요청 절차·방법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중 출생년도 및 성별 자료, 「주택법」 제4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 및 사용량 등 정보의 제공을 해당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 보안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① 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보고, 공개, 표시 방법 및 에너지 소비량의 적정성 검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으며, 그 자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받을 수 있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하는 경우 건축주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사(日射)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

사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防濕層), 지능형 계량기, 고효율의 냉·난방 장치 및 조명기구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설비의 종류, 설치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5조 제목 중 “건축의”를 “조성의”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의 적합여

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및 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16조제4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제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제17조제3항 중 “인증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에너지평가 관련 전문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매입 또는 임차인이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중 “거래계약서에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매입 또는 임차인이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에너지 소비증명제 운영기관,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공개기준 및 절차 등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녹색건축자재”로 한다.

제6장(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을 제8장(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으로 하고, 제6장(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① 시·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거나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관·단체 또는 연구소, 기업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또는 효율 개선 및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2.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3.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및 사업관리
4.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6.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자금관리
7. 그린리모델링 전문가 양성 및 교육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④ 정부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시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2. 사업연도 결산서: 다음 사업연도 3월31일까지

⑥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지정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하려는 자(이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및 관리업무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

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수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1조를 제41조로 하고, 제7장(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31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③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7조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아닌 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등급구분, 응시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자격 관리, 시험절차, 검정 수수료,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의 방법,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및 관련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경력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준수사항)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하거나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취득 및 시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종전의 제27조)의 제목 중 “위임”을 “위임 및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7.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관리를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장에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2. 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3.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취소
4. 제30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취소
5. 제33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0조 앞에 “제9장 벌칙”을 삽입한다.

제40조(벌칙)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종전의 제31조) 각호 부분을 제외한 본문의 “2천만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1호 및 제3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사(日射)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열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지능형 계량기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6. 제15조의2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7.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8.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9.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 제15조제2항,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및 제35조제1항 중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 2”를 각각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로 한다.

제6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또는 교육 등 절차를 거쳐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정할 수 있다.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u>건축물을 말한다.</u></p> <p>2. (생 략) <u><신 설></u></p> <p>제6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u></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 ---- <u>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u></p> <p>2. (현행과 같음)</p> <p>3. <u>“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기계·전기·신재생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u></p> <p>제6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u></p>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 ⑥ (생략)

<신설>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 수요 조사 및 통계 작성
2. 녹색건축의 인증·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사후 관리
3. 녹색건축물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4. 녹색건축물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5.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6. 녹색건축물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7.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건축자재(이하 “녹색건축자재”
라 한다) 및 설비의 성능평가·
인증 및 사후관리

8.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 생
산·시공 전문기업에 대한 지
원

9.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의 공
용화 지원

10. 녹색건축센터의 운영 지원

1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의 실시

12. 녹색건축물 관련 국제협력

13. 녹색건축물 기술의 국제표
준화 지원

14.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
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업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3. (생략)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방안

5. ~ 6. (생략)

② ~ ③ (생략)

<신설>

④ (생략)

제10조(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공급 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및 조성된 사업비의 집행·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5.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0조(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5. (생략)

<신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1. ~ 4. (현행과 같음)

5.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
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7.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에 따른 관리단 또는 관리단
으로부터 건물의 관리에 대하
여 위임을 받은 단체

9. (현행 제5호와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에게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 또는 실시간으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도
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
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야 한다.

⑤ -----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
-----.

1.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중 출생년도 및 성별 자료, 「주택법」 제4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 및 사용량 등 정보의 제공을 해당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요

⑤ 제3항에 따른 제출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공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생략)

<신설>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 보안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3항·제4항에 따른 제출 방법·서식, 제5항에 따른 공개 방법·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요청 절차·방법 등 -----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① 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효율이 낮은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으며, 그 자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보고, 공개, 표시 방법 및 에너지 소비량의 적정성 검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③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건축

<신 설>

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의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하는 경우 건축주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사(日射)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防濕層), 지능형 계량기, 고효율의 냉·난방 장치 및 조명기구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설비의 종류, 설치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① (생략)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는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및 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5. (현행과 같음)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

<신 설>

제18조(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이하 “에너지 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제1항에 해당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제18조(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매입 또는 임차인이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

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거래계약서에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발급기준, 발급절차, 발급기관 및 수수료 등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이하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건축자재 개발 및 시공 기술의 개발

② ~ ④ (생략)

<신 설>

매입 또는 임차인이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③ 에너지 소비증명제 운영기관,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공개기준 및 절차 등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녹색건축자재-----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장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신 설>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① 시·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신 설>

4.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
행강제금으로 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
하는 수익금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
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
다.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거나 그린리
모델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그린리모델링 창조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
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센
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관·단체 또는 연구
소, 기업 임직원 등의 파견 또

는 검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또는 효율 개선 및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2.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3.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및 사업관리

4.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6.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자금관리

7. 그린리모델링 전문가 양성 및 교육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④ 정부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시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2. 사업연도 결산서: 다음 사업연도 3월31일까지

⑥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지정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하려는 자(이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및 관리업무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수행을 거부한 경우

<신 설>

<신 설>

5.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사업
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7장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31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시험 등) ① 건축물에너지평가
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
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
통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물에너지
평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사람

5.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
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
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7조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
가 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
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
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아닌
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
험의 등급구분, 응시자격, 검정
방법,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자
격 관리, 시험절차, 검정 수수
료,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의 방
법,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시험 및 관련업무의 수행을 위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 설>

<신 설>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경력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준수사항)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범위
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
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
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
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
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건
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한 경
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

<신 설>

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회)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취득 및 시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회를 둘 수 있다.

1.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권한의 위임) (생략)

제8장 보칙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신 설>

<신 설>

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7.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관리를 위한 업무를 대

<신 설>

제2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생략)

제29조(기본계획 보고) (생략)

제30조(국가보고서의 작성) (생략)

<신 설>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현행 제28조와 같음)

제37조(기본계획 보고) (현행 제29조와 같음)

제38조(국가보고서의 작성) (현행 제30조와 같음)

제3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2. 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3.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취소
4. 제30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취소
5. 제33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

<신 설>

<신 설>

제3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생략)

2. (생략)

<신 설>

<신 설>

평가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제9장 벌칙

제40조(벌칙)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과태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천만원-----

1.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현행 제1호와 같음)

<삭 제>

3.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사(日射)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열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신 설>

지능형 계량기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에너
지 관련 전문기관

<신 설>

6. 제15조의2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 신청서
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신 설>

7.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녹색
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
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신 설>

8.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에너
지효율등급 인증의 결과를 표
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
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
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신 설>

9.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
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
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